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0조·별표 2)

○ 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區)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9항(운영)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사용료 등)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구성 등)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함.
- 안 별표1에서는 수강액 상한액을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함
- 안 별표2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의 감면비율을 전액면제에서 “100%이내” 및 “50%이내”로 구분하고 감면 대상을 조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관련자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변경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자치회관 수강료 상한액은 지난 '16.3.24. 이후 약 8년간 동결되어 있었기에 이번 일부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35,000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는 것이며, 별표 2 관련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감면비율 같은 경우 현재 영등포구 및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23개 자치구에서 10%~100%의 감면비율을 형성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따라 감면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위원 위촉 방식의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임.
아울러,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區)를 포함하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확히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 곳은 없기에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0 호
----------	---------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 시행(안 제7조)
- 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0조·별표 2)
- 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 확대(안 별표 1)
- 라.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명확화(안 제17조)
- 마. 주민자치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4. 25. ~ 5. 16. / 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문화·복지·편익기능”으로 한다.

제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와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 관련자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중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을 “대상과 감면 비율의 결정은 구청장이”로,
“정하며,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를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감면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은 동장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된”을 “신청서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
- ※ 1시간 초과 시 마다 50% 추가 부담

2. 수강료

구 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 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5,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 수강료는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수강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100% 이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50% 이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위 감면기준 외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 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u>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u>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운영) ① ~ ⑧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p> <p>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그 <u>기준과 감면 비율</u> 등은 별표 2로 정하며,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능) ① ----- ----- <u>문화</u> ----- <u>·복지·편익기능</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와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관련자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u></p> <p>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u>대상과 감면 비율의 결정은 구청장이</u> ----- ----- <u>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u> ----- ----- <u>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u></p>

<신 설>

⑥ · ⑦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 ⑥ (생 략)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 ⑨ (생 략)

⑩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감면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은 동장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1. (현행과 같음)

2. ----- 신청서를 제출한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두 차례만 -----

----- 한 차례만 -----.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삭 제>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
수한 자에 한한다.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